

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· 제한 대상 신규 대비표

현 행	개 정
① 부가가치세법 ○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§35②1) ○ WCO(세계관세기구)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기존 관세청장이 결정한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경우(§35②2가) ○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(§35②2나) ○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, 수입자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§35②2다)	① 부가가치세법 (현행과 같음)
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 <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> ○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(관세법 §28②) ○ 신고후 6개월 이내 보정신고(관세법 §38의2① · ②) ○ 자발적 수정신고 · 경정청구(관세법 §38의3① ~ ③) 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(관세법 §38의4①) ○ 과오납 환급(관세법 §46), 과다환급금 징수(관세법 §46),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(관세법 §106)	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 < 자발적 수정신고 등의 경우(§72②) >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
< <u>단순착오, 귀책사유 없는 경우</u>(§72④) > ○ 외국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 확인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·제출된 경우 ○ 기타 수입자의 단순착오 등의 경우	< <u>단순착오, 귀책사유 없는 경우</u>(§72④) > ○ (현행과 같음) ○ (현행과 같음)
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 < <u>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</u> > ○ 보정안내를 받고 보정기간 분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○ 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○ <u>(신설)</u> ○ 사전세액심사건에 대한 심사 중 세액을 결정·경정 전에 보정 신청하는 경우 < <u>단순착오의 경우</u> > ○ 세관제출 부속서류 기재내용과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서 잘못 작성 ○ <u>(신설)</u> 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	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(관세청장 지침) < <u>자발적 수정신고의 경우 등</u> > ○ (현행과 같음) ○ (현행과 같음) ○ <u>보정안내를 통보 받고(관세법 §38의2), 보정기간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</u> ○ (현행과 같음) < <u>단순착오의 경우</u> > ○ (현행과 같음) ○ <u>수입後,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</u> - <u>재수출면세 대상(관세법 §97)</u> - <u>재수출감면세 대상(관세법 §98)</u> 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

현행	개정
<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> ○ 세관장이 부과고지(우편물, 여행자 휴대품 등) 後, 재경정하는 경우 ○ <u>감면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는 경우</u> ○ <u>(신설)</u> ○ <u>(신설)</u> ○ <u>(신설)</u> ○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경정하는 경우, 기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	<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> ○ (현행과 같음) ○ (현행과 같음) ○ <u>납세자가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(事前)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관세청장이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37③)</u> ○ <u>납세자가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였으나, 나중에 관세청장이 직권 또는 재심사하여 변경한 경우(관세법 §86③, §87①)</u> ○ <u>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, 납세자에게 ‘정당한 사유’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</u> ○ (현행과 같음) ※ 단, 허위서류 제출·증명 등에 의한 고의의 경우는 제외